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·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호 2023-57 제출연월일: 2023년 5월 일

제 출 자: 강서구청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현행 조례상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나 조례 조항의 불명확한 부분을 개정하고, 우리구 주민자치 여건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자치소양 강화 교육 의무 이수 조항 삭제(안 제7조, 제9조)
- 나. 위원 추첨 비율 조항 삭제(안 제8조)
- 다. 분과위원회 참여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, 위원의 주민자치 활동에 사익 추구 금지 조항 신설(안 제11조)
- 라. 자치회장, 자치부회장 중임 제한 규정 추가(안 제14조)

- 마. 정기회의 개최 횟수 조정 단서 추가, 분과위원회 회의 규정 삭제 (안 제18조)
- 바. 주민총회 개최 횟수 조정 단서 추가(안 제19조)
- 사. 주민자치협의회 임원 중 감사 삭제, 임원 중임 제한 규정(안 제26조)
- 아. 협의회 정기회의 횟수 조정(안 제2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분권법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 ~제29조,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(2023, 2, 24, ~ 2023, 3, 16,) 결과: 접수된 의견 전부 수용
 - 제12조(위원의 해촉)제3항 구청장에게 해촉 요구하는 기준을 '재적위원 3분의 2'에서 '재적위원 과반수'로 완화하여 주민자치회 현장 여건 반영 및 운영 활성화 도모
 - 2) 부패영향평가 결과: 개선의견 전부 수용
 - 제8조(위원의 위촉)제2항의 '순위를 정해 예비자를 선정할 수 있다'는 규정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는 해석의 여지 있으므로 개선요구 의견 전부 수용하여 공개추첨 결과에 따라 정해진 순위라는 것을 명시
 - 3) 규제사전심사 결과: 해당 없음
 - 4)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추첨관리위원회는 위원 선정을 위한 공개추첨 시 위원의 결원 발생을 대비하여 공개추첨 결과에 따라 순위를 정해 예비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한 차례 연임 이후는 신규 위원과 동일하게 추첨 방법에 따른다. 다만,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"참여하며"를 "참여할 수 있으며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,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2조제3항 중 "재적위원 3분의 2"를 "재적위원 과반수"로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"연임"을 "중임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중임 횟수를 산정할 때 종전의 임원 임기 횟수를 포함한다.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정기회의는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18조제5항을 삭제한다.

제1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 횟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21조제4호를 삭제한다.

제26조제2항 중 "감사 1명"을 삭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협의회 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"을 "한 차례만 중임"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종전의 제1항) 중 "2개월에"를 "분기별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회 의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,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아 혅 했 개 정 제7조(위원의 자격) ① (생 략) | 제7조(위원의 자격) ① (현행과같음) ② 위원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| <삭 제> 주민자치소양 강화 교육(이하 "주민자치학교"라 한다)을 위원 선정 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 람이어야 한다. 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 제8조(위원의 위촉) ① (생 략) | 제8조(위원의 위촉) ①(현행과 같음) ② 추첨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② 추첨관리위원회는 위원 선정 호에 따라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| 을 위한 공개추첨 시 위원의 결 선정하고,각 호별로 5명 이하의 원 발생을 대비하여 공개추첨 예비자를 공개추첨하여 순위를 결과에 따라 순위를 정해 예비 정한다. 다만, 추첨 대상 인원이 자를 선정할 수 있다. 제5조에서 정한 정원 이하일 경 우 추첨하지 않고 전원 선정한 다. 1. 정원의 100분의 60은 공개모 집에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. 2. 정원의 100분의 40은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,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. ③ ~ ⑧ (생 략) ③ ~ ⑧ (현행과 같음)

혅 했

제9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한 차례 연임 이후는 신규 위원과 동일하게 추첨 방법에 따른다. 다만, 결원 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연임할 수 있 는 위원은 주민자치학교 교육 과정을 임기 중 6시간 이상 이 수한 위원만 해당된다.

제11조(위원의 의무) ① 위원은 제11조(위원의 의무) ① ---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하고,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1곳 이상 참 여하며,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 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<신 설>

제12조(위원의 해촉) ③ 위원에게 제12조(위원의 해촉) ③ -----

개 정 아

제9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으며 한 차례 연임 이후는 신규 위원과 동일하게 추첨 방법에 따른다. 다만, 결원 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로 하다.

여할 수 <u>있으며</u>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,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.

혅 행 개 정 아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 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 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, 주민자치회 - 재적위원 과반수----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. 제14조(주민자치회의 장) ①・② 제14조(주민자치회의 장) ①・②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 (3) -----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중임----. ④ (생략) ④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⑤ 중임 횟수를 산정할 때 종전 의 임원 임기 횟수를 포함한다. 제18조(회의) ① 주민자치회의 제18조(회의) ① -----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,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 하고,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 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 개최한다. <단서 신설> ----. 다만, 정기회의 는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

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

현 행	개 정 안			
	<u>있다.</u>	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	
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	<u><삭 제></u>			
이상 개최한다.				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			
제19조(주민총회) ① (생 략)	제19조(주민총회) ① (현행과 같			
	<u> </u>			
②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	②			
고,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				
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				
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 <u><단</u>	<u>다</u>			
<u>서 신설></u>	<u>만,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</u>			
	회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 횟수			
	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			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			
제21조(자치계획의 구성) 자치계	제21조(자치계획의 구성)			
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				
로 구성한다.	<u>.</u>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	
4. 분과별 사업계획	<u><삭 제></u>			
5. • 6. (생 략)	5.・6. (현행과 같음)			
제26조(구성 등) ① (생 략)	제26조(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			
② 협의회에는 <u>회장 1명, 부회</u>	② <u>회장 1명, 부회</u>			
<u>장 3명, 감사 1명, 간사 1명</u> 의	<u>장 3명, 간사 1명</u>			
임원을 두되 회장 및 부회장은				

현 행	개 정 안
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	
회장이 선임한다.	
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자치	③
회장의 재직기간으로 하고, <u>협</u>	<u>한</u>
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	<u> 차례만 중임 할</u>
<u>며 연임할</u> 수 있다.	
제28조(회의) ① 협의회 회의는	제28조(회의)
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	
며, 정기회의는 <u>2개월에</u> 1회 개	분기별
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	
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	
중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	
때에 회장이 개최할 수 있다.	

(治學의 강규주() (자회 및 자치한 설치·원에 관한 조례)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- 1. 비용발생 요인
 - O 해당없음
- 2. 미첨부 근거 규정
 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4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- 3. 미첨부 사유
 -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
- 4. 작성자: 자치행정과장 김 성 태

(담당: 행정7급 김은정 / ☎ 2600-6159)

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

○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○ 현행 조례상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조례 조항의 불명확한 부분을 개정하고, 우리 구 주민자치 여건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가. 주민자치소양 강화 교육 의무 이수 조항 삭제(안 제7조, 제9조)
- 나. 위원 추첨 비율 조항 삭제(안 제8조)
- 다. 분과위원회 참여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, 위원의 주민자치 활동에 사익 추구 금지 조항 신설(안 제11조)
- 라. 자치회장, 자치부회장 중임 제한 규정 추가(안 제14조)
- 마. 정기회의 개최 횟수 조정 단서 추가, 분과위원회 회의 규정 삭제(안 제18조)
- 바. 주민총회 개최 횟수 조정 단서 추가(안 제19조)
- 사. 주민자치협의회 임원 중 감사 삭제, 임원 중임 제한 규정 (안 제26조)
- 아. 협의회 정기회의 횟수 조정 (안 제28조)

□ 검토의견

- 동 개정안은 위원 선정 전 주민자치소양 강화 교육 이수 조항 삭제, 위원의 위촉 조항 정비, 분과위원회 참여 임의규정으로 변경, 주민자치 (부)회장의 중임 제한 규정 신설 등 주민자치회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꾀하는 내용으로,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<u>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</u> 아니함

부패영향평가 결과

평 가 번 호	2023-5					
자치법규명		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				
평가담당부서	감사담당관	직 급	행정7급	성 명	김완주	
입안주무부서	자치행정과	조치일		2023. 3. 15.		
관련	조문	검토결과		조치사항		
제8조(위원의 위촉)② 추첨관리 위원회는 위원 선정을 위한 공개 추첨시 위원의 결원 발생을 대비 하여 순위를 정해 예비자를 선정할 수 있다.		예비자 순위 선정 시 '순위를 정해 예비자를 선정할 수 있다.'는 규정은 별도 기준을 두어 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공개 추첨결과에 따라 정해진 순위 라는 것을 명시하여 부패 유발 요인 제거 필요함.		개선 요구		

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						
관리번호	2023A서울강서004					
정 책 명	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					
	기관명					
소관부서	부서명					
	담당자명	김은정	전화번호	02-2600-6159		
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	2023년 2월 27일					
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(자치행정과)	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'은 현행 조례상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나 조례 조항의 불명확한 부분을 개정하고, 관내 주민자치 여건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					
	■ 개선사항 없음 □ 자체개선안 동의 □ 개선의견					
종합 검토 의견 (성별영향평가책 임관)	'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'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특성 반영, 성 별통계 구축,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					
검토의견 반영계획서 「성별영향평가법」제8	해당 없음					

2023년 03월 07일

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

(담당자/연락번호 : 정현주/02-2600-6762)

자치행정과장 귀하

붙임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

- 제27조(주민자치회의 설치)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.
- 제28조(주민자치회의 기능)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
 - 2.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
- 제29조(주민자치회의 구성 등)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 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공직선거법

- 제112조(기부행위의 정의 등)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.
 - 4. 직무상의 행위
 - 마.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 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